

청구 소송에 대한 정보

Labor Standards와 함께 청구 소송을 걸지 알아보려면 이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십시오. 밀린 임금, 불법 공제, 임금 할증, 최저 임금, 초과근무수당, 미지급 식대 등을 청구하는 LS 223을 작성하십시오.

- **만일 귀하가:**

- 농장 근로자인 경우 양식 LS 710을 사용하여 불만을 제기하십시오.
- 급여 내역 불만을 제기하려면 양식 LS 608.1을 사용하십시오.
- Pay Equity 불만을 제기하려면 양식 LS 608.2를 사용하십시오.

LS 223은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. 뉴욕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뉴욕주 노동부 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)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제공된 정보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(888) 469-7365번에 문의하십시오.

작성하신 양식은 위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.

Labor Standards는 밀린 임금 및 기타 고용 문제와 관련된 많은 유형의 청구 및 불만을 받습니다. 즉,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:

- **밀린 임금 청구 시기:**

- 고용주가 근무한 모든 시간(직업 교육 포함)에 대해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
- "잔고 부족"(NSF) 때문에 급여수표가 반송되었을 경우
- 팁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
- 사전 예고 없이 급여 요율이 감소한 경우

- **불법 공제 청구에 대한 고용주 잘못:**

- 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했을 경우
-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
- 유급 가족 휴가 보너스의 일부액에 대해 초과 청구할 경우

- 고용주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속했음에도 **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밀린 급여 할증 청구:**

- 휴가 수당
- 휴일 수당
- 보너스

고용주가 임금 할증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법적으로 해당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

- 고용주가 (주법에 따라) 밀린 임금이 있음에도 **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밀린 급여 할증 청구:**

- 유급 병가
- Wage Parity 보조금 혜택
- 가사 노동자를 위한 유급 휴일

- **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 급여/초과근무수당 청구:**

- 현재 최저 임금, 패스트 푸드 최저 임금 또는 팁을 받는 근로자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
-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(대부분의 직원은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과 급여의 ½을 받아야 하지만 약간의 예외가 있음)

- **최저 임금 추가액 청구 조건:**
 - 고용주가 직원 유니폼 세탁비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경우
 - 직원이 추가근무수당을 받아야 할 경우
 - 근무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10시간을 초과해 직원이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할 경우
- **임금 외 기타 불만 제기 조건:** 고용주가 의무 식사 시간, 휴무일, 급여 명세서, 급여 통지서, 적시 임금 지급을 미이행했을 경우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상대로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
- **해당 청구를 뒷받침하는 정보 발송**(제공된 경우), 복지 정책 사본, 급여 명세서, 취소된 급여수표, 현금 교환불가 수표, 시간 기록 등 (원본 문서를 보내지 **마십시오.**)

파트 1 ~ 3 및 파트 9 ~ 11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 다음 사항도 완료하십시오:

- 밀린 임금 및/또는 불법 공제 청구, 파트 4
- 무급 병가, 파트 5
- 임금 할증 청구, 파트 6
- 최저 임금 또는 초과근무수당, 파트 7
- 임금 외 기타 불만, 파트 8

청구 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5-30일 이내에 해당 케이스 번호 및 기타 중요한 정보가 담긴 서한이 발송됩니다. 케이스 번호가 적힌 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. 고용주가 귀하에게 밀린 금액을 지급하거나 귀하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.

Labor Standards는 모든 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. Labor Standards에서 청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뉴욕주 밖에서 수행한 근로
- 소액 청구 또는 민사 법원에서 임금 회수 소송을 제출한 경우
- 매매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
- 자영업자이거나 또는 독립 하청업자인 경우
- 정부 기관, 타운, 카운티 또는 시당국으로부터 밀린 임금이 있는 경우
- 직원에게 임금 또는 할증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밀린 임금이 있는 경우
- 노동조합의 고충 및 중재 절차에 따른 임금 또는 복리 후생을 청구할 경우
- 특정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급여 수급을 배제하는 고용주 급여 정책이 있는 경우(예: 예고 없이 종료)
- 밀린 임금 할증이 있는데 기한일로부터 아직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
- 임원직, 행정직 또는 전문직으로 근무했고 주당 \$900 이상 벌었을 경우
- 공공 근로를 수행했을 경우(PW4를 사용하여 이의 제기)

Labor Standards는 차별 주장, 가족 휴가 혜택 미제공, 업무 관련 안전 문제 또는 장애 청구를 조사하지 않습니다.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주 당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(888) 469-7365번에 문의하십시오.